

이훈재

8-9

조선인민에 대한 일본의 배상, 보상과

그 법적 근거

93, 11, 7~8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박사 정 남 용

일본이 과거 조선인민에게 끼친 막대한 인적 및 물질적, 정신문화적 피해로하여 초래된 조일 두 나라사이의 비정상적인 과거를 깨끗이 하는것은 선린우호관계를 바라는 조일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이며 일본이 세계면전에서 심히 흐려진 자기의 영상을 개선하고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한 출발점이다.

일본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데서 기본은 일본의 자세와 립장문제이다.

일본이 우리 인민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옳게 청산하려면 과거의 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하며 응분한 국가배상 그리고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에게 개인보상을 하여야 한다.

일본은 첫째로 조선침략에 대한 국제법적책임으로부터 국가배상,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 어떤 주권국가에 대한 다른 나라의 군사적강점과 통치의 실시는 명백히 침략으로 되며 침략은 곧 국제범죄로 된다.

국제법은 우선 무력침공과 군사적지배는 엄중한 침략행위로 된다는 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침략의 정의에 관한 1933년 7월 3일부 런던조약 제3조 2항과 1974년 12월 14일부 유엔총회 제29차회의결의 3의 1에서는 《전쟁개시의 선언이 없이도 한 나라 병력에 의한 다른 나라의 령토침입》과 《한 국가의 무력에 의한 다른 국가의 령토에 대한 침입 및 공격 혹은 이러한 침입이나 공격의 결과로 다른 나라의 령토나 령토의 일부분의 병합》은 로골적이며 엄중한 침략행위로 된다고 규제하였다.

국제법은 또한 한 나라에 의한 다른 나라의 침략행위는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로 된다고 하였으며 국제군사재판소 규정 제6조 1항과 극동군사재판소 규정 제5조 1항 그리고 뉴른베르그재판소 규정과 재판에서 인정된 국제법의 세원칙 6의 1에서 침략행위는 평화에 대한 죄 즉 전쟁범죄로 된다고 하였다.

력사적사실에 의하여 밝혀진바와 같이 일본은 1905년 《을사5조약》조작 혈썌 전인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을 구실로 일본침략군무력을 조선에 주둔시키고 그에 의거하여 범죄적인 《구조약》들을 조작할것을 모의하고 구조약들의 조작시에는 침략무력을

직접 발동하였다.

이것은 바로 일본이 《구조약》들에 기초하여 조선에 들어온것이 아니라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하고 군사적으로 강점한것으로서 조선인민앞에 침략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것을 말해준다.

일본은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침략과 그로 하여 초래된 국가적, 민족적인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하여야 한다.

일본은 둘째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법적책임으로부터 피해자자신들에게 개인보상을 해야 한다.

일본은 조선강점 40여년간에 근 20만의 성노예, 600여만에 달하는 조선인청장년들을 노예화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엄중히 침해하였다.

일본이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국가적인 공식 사죄를 하고 배상을 하면 조일 두 나라사이의 국가적인 문제는 해결될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개개인과 그 유가족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는다.

개별적피해자들이 당한 명예손상과 심리적, 감정상의 피해를 회복하자면 가해국인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개인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피해의 개인보상은 성노예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 600여만 강제로동의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 그리고 집단학살의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일본이 조선인 피해자 개개인들에게 보상해야 하는것은 그 누구도 침해, 유린, 제한할수 없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다는데 있다.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민사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등 수십건의 국제인권조약과 선언들에서, 사람은 평등한 인간으로 태어나며, 건강과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불가침권을 가지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결권을 누리며, 경제, 문화, 사회생활에 자유롭게 참가하며, 거주와 이주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다.

인권문헌들에 규제된 이러한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는 인간자체와 분리시켜 생각할수 없는 사람의 고유한 권리이며 누구도 침해유린할수 없는 법적권리이고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행규범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의 침해는

국제적으로 인간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가장 엄중한 범죄로 강행규범의 위반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의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 자신에게 직접 사죄하고 보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포괄적인 국가적 사죄나 보상으로서는 개개사람들의 피해를 충분히, 철저히 가질 수 없으며 개인보상을 통해서만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고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는 데로부터 출발하였다.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것은 전후 일본이 일련의 나라에서 개인보상을 받은 사실이나 독일이 수많은 전시피해자들에게 개인보상을 한 사실에 의하여 더욱 공식화되었다.

전후 일본은 침략자, 전패자로서 많은 피해자국가에 국가적 사죄와 전쟁배상, 손해배상은 하면서도 전승국인 캐나다로부터는 그가 전시법규와 기본인권 에 위반되게 일본군 포로들을 박해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개인보상을 요구하여 받았으며 미국으로부터도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에 위반되게 미국이 일본계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다는 이유로 개인적 보상을 요구하여 받은 바 있다.

전후 독일은 전시피해자국가들과 체결한 평화조약들에 기초하여 그들에게 전쟁배상을 하였을뿐아니라 《런방보상법》을 제정하고 그에 기하여 여 전시피해자들에 대한 개별보상상으로 수천억마르크의 돈을 지불하였다.

제반사실은 인간의 기본적자유와 권리침해에 대한 국제법적책임은 전승국인가, 전패국인가에 관계되는것도 아니며 국가적보상하나만으로 해결되는것도 아니며 반드시 피해자개개인에 보상함으로써만 실현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은 이러한 원칙적요구와 전례에 따라 조선인민앞에 응분의 국가적배상과 함께 피해자모두에게 개인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신은 개인보상을 받아먹으면서도 우리 나라 피해자들에게 하여야 할 개인보상에 대하여서는 구태의연하게 외면하고있다.

일본은 자신이 지난 시기 조선인민에게 끼친 모든 범죄행위들이 역사적사실로 밝혀지고 그 엄중성과 범죄성들이 법적으로 날날이 증명된 조건에서 조선인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국가적배상과 피해자들에게 개인보상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일본이 조선인민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응분의 국가적

배상과 개인보상을 하는것은 자기의 어지러운 과거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길이며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된다.

그것은 또한 국제적도의와 정의에 부합되는것이며 아세아와 세계인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얻는것이다.

일본의 국제법적범죄에 대한 책임과 그에 대한 추궁에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문제점에 주의가 돌려져야 한다.

첫째로, 일본의 모든 범죄행위들이 지난 시기에 감행된것이라고 하여 그 책임이 약화되거나 해소되지 않는다는것이다.

그것은 일본이 조선에서 감행한 범죄는 가장 엄중한 침략에 대한 죄, 반인륜적범죄, 인권유린범죄로서 여기에는 뉴른베르그국제재판소규정과 1946년 2월 13일부 유엔총회결의 3의 (1)과 1946년 12월 11일부 결의 95의 (1) 그리고 1949년 전쟁피해자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과 그의 보충의정서에 의하여 어떤 경우에도 법적시효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이다.

둘째로 일본이 조선에서 감행한 모든 범죄는 유스-코겐스에 근본적으로 저촉되는 엄중한 대죄로서 그,무엇

에도 구애됨이 없이 국제법적 책임이 산생된다.

그것은 일본이 감행한 침략과 주권 강탈, 제노사이드, 노예화, 인권침해는 유스-코젠스의 강행적 성격에 근본적으로 저촉되기 때문이다.

이상 제반사실과 법적근거에 의하여 일본은 조선인 민앞에 공식 사죄하고 국가배상을 해야 하며 조선인 피해자들에게 개인보상을 해야 한다.

특히 인권과 기본적자유를 침해한 범죄로 하여 초래된 피해에 대하여서는 단순히 금전상의 보상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공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공식적인 사죄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범죄사실에 대한 객관적서술, 피해자들에 대한 경의표시 등 국제적도의의 관점에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